

거창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55
----------	---------

제출연월일	2005. 10.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우리군 여비조례가 1964. 3. 10 조례 제47호로 제정되어 30여회에 걸쳐 일부분만 개정되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전면 개정하면서,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함.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 상시출장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운전원에게도 관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개정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 행정자치부 공문(지방공무원제도팀 - 231, 2005. 4. 15) 및 경상남도 공문(감사관 - 2175, 2005. 4. 19)

거창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거창군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6조 및 동규칙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4. 제18조,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